

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2 전단 중 “영 제20조의3제5항”을 “영 제20조의4제5항”으로 한다.

별표 2 II 제10호가. 근거 법조문란 및 같은 II 제10호나. 근거 법조문란 중 “영 제20조의2제1호”를 각각 “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II 제10호다. 근거 법조문란부터 같은 II 제10호바. 근거 법조문란 까지 중 “영 제20조의2제2호”를 각각 “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”로 하며, 같은 II 사목을 가목으로 하고, 같은 II 아목을 사목으로 하며, 같은 II 자목을 나목으로 하고, 같은 II 차목을 아목으로 하며, 같은 II 제11호가.(종전의 제10호사.) 근거 법조문란 중 “영 제20조의2제3호”를 “영 제20조의제2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II 제10호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영 제20조의2제4호”를 “영 제20조의2제1항제3호”로 하며, 같은 II 제11호나.(종전의 제10호자.) 근거 법조문란 중 “영 제20조의2제5호”를 “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”로 하고, 같은 II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「약사법」 제31조제2항	영 제20조의2제	면허효력	면허효력정	면허효력
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	2항제3호	정지 15일	지 1개월	정지 6개월
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				

신고를 하지 아니한 동물 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 하는 행위				
---	--	--	--	--

별표 2 II 제10호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영 제20조의2제6호”를 “영 제20조의2제1항제4호”로 하고, 같은 II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 의 행위를 하였을 때	법 제32조제2항 제7호			
---	------------------	--	--	--

별지 제11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11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1호의3서식 부터 별지 제11호의7서식 까지 및 별지 제11호의8서식으로 하고,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의2(과징금의 징수절차) <u>영</u> 제20조의3제5항에 따른 과징금 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「국고 금 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준용한 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 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.	제25조의2(과징금의 징수절차) <u>영</u> 제20조의4제5항----- ----- ----- --. ----- ----- -----.